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교진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규모 지역투자사업 추진에 따라 수도권 소재 산업체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비수도권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수요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짐.

그러나 지방대학이 현행 입학정원 범위에서 해당 산업분야와 관련된 기존 학과의 입학정원을 확대하려면 다른 모집단위의 정원을 감축하거나 학과 개편 등 중장기적인 정원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산업체의 투자 및 사업개시 일정에 맞추어 필요한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대규모 지역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산업체와 지방대학이 지역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협약에서 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정원 외로 입학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긴급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방대학과 지역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며, 대규모 지역투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 확대(안 제29조제2항제17호 신설)

1) 지역의 긴급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방대학과 지역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체와 지방대학이 지역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협약에서 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정원 외로 입학하거나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합의 예정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9. 14. ~ 10. 26.) 예정

3) 행정규제 : 사전협의 완료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과 각 목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산업체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협약에 따른 모집단위에 입학하는 사람. 다만, 제28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에 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해당 산업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사업장을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권역(「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같은 영의 별표 제1호가목에서 정한 해당 지역의 범위에 따른 권역을 말한다. 이 호에서는 이하 같다.)으로 이전한 경우(예정된 것을 포함한다.)

나. 해당 산업체가 협약을 체결하는 지방대학이 소재한 권역으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예정된 것을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9조제2항제17호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① (생략)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제8호·제9호·제11호·제12호·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②----- ----- ----- ----- ----- ----- -----.
1. ~ 16. (생략)	1. ~ 16. (현행과 같음)
<u><신 설></u>	1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과 각 목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산업체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협약에 따른 모집단위에 입학하는 사람. 다만, 제28조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에 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해당 산업체가 「수도권

③ ~ ⑦ (생 략)	<u>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u> <u>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u> <u>사업장을 해당 지방대학이</u> <u>소재한 권역(「지방대학</u> <u>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u> <u>관한 법률 시행령」 제10</u> <u>조제3항 및 같은 영의 별</u> <u>표 제1호가목에서 정한 해</u> <u>당 지역의 범위에 따른 권</u> <u>역을 말한다. 이 호에서는</u> <u>이하 같다.)으로 이전한 경</u> <u>우(예정된 것을 포함한다.)</u> <u>나. 해당 산업체가 협약을 체</u> <u>결하는 지방대학이 소재한</u> <u>권역으로 사업장을 신설</u> <u>또는 증설한 경우(예정된</u> <u>것을 포함한다.)</u> ③ ~ ⑦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대학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916